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2024. 11.(통권 제7호)

I. 9월에 발의된 법률안 소개

II. 9월에 공포된 법률 소개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목차

I. 9월에 발의된 법률안 소개 1

1. 통계
2.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소개
3. 키워드로 보는 의원발의 법률안 53선
 - 행정 17건
 - 경제 22건
 - 사회문화 14건

[바로가기](#)

II. 9월에 공포된 법률 소개 16

1. 통계
2. 구하라법(민법 개정) 소개

[바로가기](#)

I

9월에 발의된 법률안 소개

1. 통계

■ 2024년 9월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위 위원장 대안 포함 총 969건이다.

○ 의원발의 법률안은 914건¹⁾(98.1%), 정부제출 법률안은 18건(1.9%)으로 총 932건이다.

○ 상임위 위원장 대안은 37건이다.

- 상임위 위원장 대안은 의원발의 법률안이나 정부제출 법률안 중에서 내용이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안으로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법률안을 말한다. 대안에 포함된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는데, 이 건의 경우 위원장 대안 37건이 제안되면서 의원발의 법률안 184건과 정부제출 법률안 7건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 대안 37건 중 34건은 9. 11. 발의되고, 9. 19. 국회 통과(33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하여, 10. 16. 또는 10. 22.에 공포되었다.

- 대안 37건 중 나머지 3건은 9. 11. 발의되고, 9. 19. 원안가결됐으나, 재의요구되어 10. 4. 부결됨에 따라 공포되지 못하였다.

■ 4년 전과의 비교

○ 2020년 9월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위 위원장 대안 포함 총 970건이다.

○ 의원발의 법률안은 921건(97.7%), 정부제출 법률안은 22건(2.3%)으로 총 943건이다.

○ 상임위 위원장 대안은 27건이다. 대안 27건 모두 가결되어 공포되었다.

■ 작년과의 비교

○ 2023년 9월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위 위원장 대안 포함 총 823건이다.

○ 의원발의 법률안은 745건(96.1%), 정부제출 법률안은 30건(3.9%)으로 총 775건이다.

○ 상임위 위원장 대안은 48건이다. 대안 48건 모두 가결되어 공포되었다.

1) 914건 중 5건은 철회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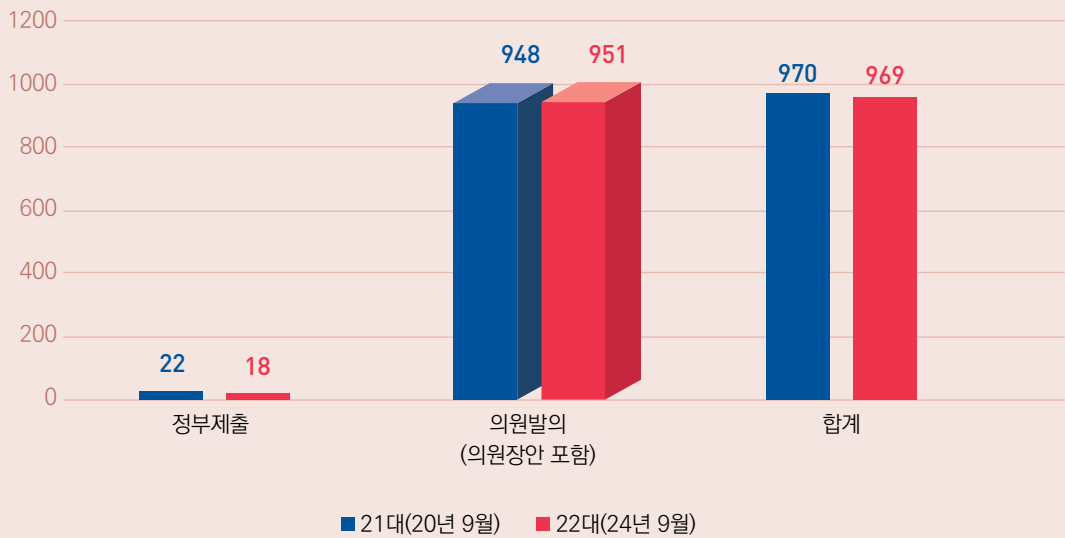
■ 제21대 국회와의 비교표

		전체 건수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상임위 위원장 대안
제22대	2024. 9.	969	914	18	37
제21대	2023. 9.	823	745	30	48
	2020. 9.	970	921	22	27

■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비교표

월	전체 건수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상임위 위원장 대안
2024. 6.	1,067	1,059	51	3
2024. 7.	1,241	1,099	140	2
2024. 8.	992	963	21	8
2024. 9.	969	914	18	37

■ 제21대 국회 직후 시기(20년 9월)와의 비교 그래프



2.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²⁾ 개정안) 소개

- 9월 발의 법률안 951건³⁾ 중에서 딥페이크 처벌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대표로 소개한다.

■ 기본 정보

-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 12건⁴⁾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제2204300호)으로 9월 25일 발의되었다.
- 대안은 9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었고, 10월 16일에 공포(법률 제20459호) 및 시행되었다.

■ 추진 배경

-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그런 영상을 퍼뜨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을 말함.

- 실제로 작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고, 피해자 중에는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종전 법률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불법촬영물*에 비해 약하고, 불법촬영물의 경우와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 ‘불법촬영물’이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말함(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 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음. 이하 같음.

3) 951건은 의원발의안 914건과 상임위 위원장 대안 37건을 합친 숫자임.

4) 의안번호 제2203241호(2024. 8. 27. 발의), 제2203244호, 제2203245호, 제2203247호, 제2203251호, 제2203314호, 제2203317호, 제2203356호, 제2203395호, 제2203423호, 제2203517호, 제2203546호(2024. 9. 2. 발의).

■ 주요 내용⁵⁾

○ ‘반포등을 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음

- 법 제14조의2제1항 중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 부분을 삭제하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의 경우와 같이, 목적에 관계없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도록 한다(제14조의2제1항).

* ‘반포등’이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말함(제14조제2항)

○ 법정형 상향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을 한 자 또는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하여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한다(제14조의2제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

- 불법촬영물의 경우와 같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한다(제14조의2제4항).

※ ‘알면서’ 논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과다한 수사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제14조의2제4항에 추가되었고,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그 하루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알면서’를 추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알면서’를 도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다.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형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법문에 ‘고의’나 ‘알면서’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는데도, 법문에 굳이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수정안의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다.

○ 협박죄 및 강요죄 신설

- 불법촬영물의 경우와 같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한다(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

5) 해당 법률안은 이미 국회 통과하여 공포됐지만 공포일이 9월이 아닌 10월이어서 9월 공포법률로 소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안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안 12건의 발의일이 8월과 9월에 분포되어 있어서 9월 발의법안으로 소개하게 되었다.

6) 김한규의원 발언 중에서 발제, “제418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2024. 9. 26., 26면.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련 국회 입법 동향⁷⁾

○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및 특허청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24. 11. 6.)하였다. 이 대책과 관련된 국회 입법 동향을 간단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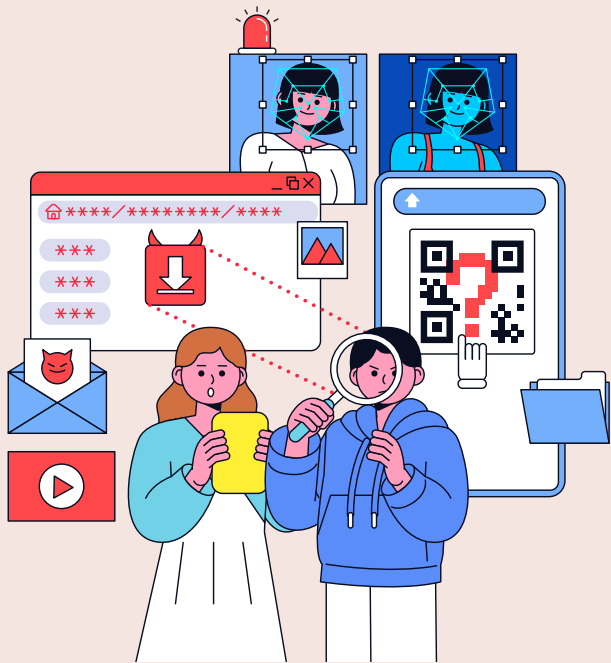
	법률	주요 개정 및 제·개정안 내용	진행 상황
1	성폭력 처벌법 (법무부)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 등에 대한 법정형 상향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의안번호 제2204300호) •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 특례 적용(의안번호 제2205407호)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의안번호 제2203313) •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도입(의안번호 제2204687)	국회 통과 (9. 16.) 공포 (10. 16.) 국회 통과 (11. 14.) 법사위 계류 중
2	청소년 성보호법 (여가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나, •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후승인 허용 •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통보의무 신설(의안번호 제2204314호)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도입(의안번호 제2204686호)	국회 통과 (9. 16.) 공포 (10. 16.) 여가위 계류 중
3	성폭력 방지법 (여가부)	•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 확대(국가→국가 및 지자체) • 불법촬영물 등 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안번호 제2204306호)	국회 통과 (9. 26.) 공포 (10. 16.)
4	범죄 수익은닉 규제법 (법무부)	• 기소 전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한 독립 몰수·추징제 도입(의안번호 제2204390호)	법사위 계류
5	통신비밀 보호법 (법무부)	• 불법·허위영상물 제작 유통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허용(의안번호 제2204685호)	법사위 계류

7) 법무부 보도자료(2024. 11. 6.),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의 별첨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24면.

	법률	주요 개정 및 제·개정안 내용	진행 상황
6	인공지능 기본법안 (과기부, 과방위)	•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 (의안번호 제2200543호, 제2200673호)	과방위 계류
7	정보 통신망법 (방통위, 과방위)	•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하역금 댁페이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함(의안번호 제2205447호)	국회 통과 (11. 14.)
		•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이용중단, 탈퇴 등 제재	미발의
	전기통신 사업법 (방통위, 과방위)	• 플랫폼 사업자가 先조치하고 방심위에 後심의 요청 허용 (의안번호 제2203979호)	과방위 계류

■ 기타: 사업자에 대한 규제

-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댁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부가통신 사업자와 같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64조의5, 제7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7조, 제92조, 제95조의2 참고).



3. 키워드로 보는 의원발의 법률안 53선

2024년 9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914건 중 주요 법률안 53건(행정 17건, 경제 22건, 사문 14건)을 키워드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행정 17건

○ 일부개정안 15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교육부	9. 4.	2203609	교육자치법	교육감 직선제 폐지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함 - 시·도지사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제2203610호) 의결을 전제로 함
	9. 23.	2204183	공교육정상화법	수능시험 - 수능시험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함 -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금지, 대학등의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 공개 조치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9. 3. 등	2203568 등 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서울대병원법 서울대치과병원법	교육부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함
	9. 30.	2204444	국립대학회계법	시·도지사의 위원 추천 지자체와 국립대학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9. 27.	2204386	초·중등교육법	온라인학교 신설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의 다른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학교’를 신설함
	9. 27.	2204402	초·중등교육법	전자책 등 전자책은 교과용 도서로 규정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함
	9. 19.	2204097	국방정보화법	국방 사이버보안 강화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협관리를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8) 의안번호 제2203568호, 제2203696호, 제2203570호, 제2203672호, 제2203567호, 제2203668호, 제2203575호, 제2203675호임.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안전구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사실상 비행 미 실시 지역은 비행 안전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9. 3.	2203588	군사기지법	
법무부				제한보호구역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금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20.	2204142	군사기지법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9. 4.	2203636	민법	
소방청				미수죄 신설 -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 신설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는 친권상실심판, 후견인 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함 -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임시조치 규정 신설
	9. 20.	2204121	아동학대처벌법	
소방청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용수설비, 자동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9. 4.	2203631	소방시설법	
행안부				보행자 안전시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9. 23.	2204178	보행안전법	
경찰청				전동킥보드 -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낮춤 * 현재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합헌 결정 참고 - 전동킥보드 대여 시 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면 안 됨
	9. 26.	2204364	도로교통법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 물품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1항제3호(전단 등 살포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참고
	9. 26.	2204365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안 2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교육부	9. 9.	220444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사립대학 경영정상화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
법무부	9. 4.	2203643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 각 수사기관별로 산재된 형사사건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형사사건 정보나 사건관계인의 출석정보 등을 이 법을 위반하여 공개·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경제 22건

○ 일부개정안 21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금융위	서면 통보 사항 추가			
	9. 4.	2203617	금융실명법	금융기관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할 사항에 ‘거래정보등의 제공 대상 거래 기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유예 기간 및 사유’를 추가함
	9. 5.	2203705	정보통신망법	블랙컨슈머 정보통신망에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과기부	불법스팸 규제			
	9. 5.	2203706	정보통신망법	- 방통위는 이 법을 위반하는 불법스팸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 이익의 3배 또는 1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 스팸 전송 위탁은 방통위 인증받은 자에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203707호: 스팸 발송사업자 인증제) 의결을 전제로 함
	9. 19.	2204079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연구자 창업 지원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하거나 기술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구자·임직원은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 창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 창업기업에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음 - 기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법적 근거 마련
	9. 10.	2203884	합성생물학육성법안 (제정)	합성생물학 -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공정위	9. 11.	2203943	약관법	표준약관 - 공정위로부터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장지배적사업자 등은 공정위로부터 인증받은 약관을 사용해야 함
	9. 30.	2204452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마련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직접 법원에 그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방통위	9. 24.	2204215	정보통신망법	사이버폭력 - 삭제·임시조치 대상에 ‘모욕’ 추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기간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함 - 현행 온라인피해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조정절차 마련 - 대학교 포함 각급 학교의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
산업부	9. 3.	2203585	친환경자동차법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 산업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서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9. 4.	2203620	산업집적법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의 법적 근거 마련
	9. 9.	2203803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위치·설치수량 등 신고제 도입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폭발 발생 시 충전시설 설치자의 피해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부	9. 23.	2204202	건설산업기본법	공사대금 체불 방지시스템 도입 -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1건의 도급금액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발주 공사에도 적용함 ※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자는 그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사용하면 안 될 의무가 이미 규정돼 있음.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대상이 됨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9. 24.	2204207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2024년에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개발부담금 감면
국토부	9. 4.	2203641	국토계획법	공공체육시설 -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 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 마련 -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규정 신설
	9. 11.	2203933	생활물류서비스법	오토바이 번호 고지의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4.	2203638	소규모주택정비법	세입자 보호 강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9. 4.	2203640	소규모주택정비법	정비사업 활성화 규정 마련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심의, 교육·교통·재해영향평가 추가 - 기반시설 설치·제공 시 용적률 120%까지 확대 가능 -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에서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 등’으로 바꿈
	9. 4.	2203624	주거기본법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 최저주거기준(국토부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하한 기준을 높임(1인: 30㎡, 2인: 40㎡, 3인: 50㎡)
	9. 9.	2203786	주택임대차법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중기부	9. 13.	2204006	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됨
				비밀 특허제 도입 -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신설함 -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술에 대해 필요시 해외출원을 금지하고 비밀로 관리하는 비밀 특허제 도입

○ 제정안 1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국토부	9. 2.	2203516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 -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현황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등을 규정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등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

■ 사회문화 14건

○ 일부개정안 13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고용부	9. 10.	2203863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과 관련됨
농식품부	9. 2.	2203509	농지법	주말농장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함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 예만 임대차를 허용하던 것을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
문체부	9. 5.	2203698	음악산업법	노래연습장업자 부담 완화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를 속여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 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 반입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23.	2204189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마을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을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복지부	9. 3.	2203554	국민연금법	청년층 국민연금 지원 청년이 해당 연령(20세 또는 30세)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연금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함
	9. 9.	2203788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사망 사건 심층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 조사·분석 근거 마련 등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9. 10.	2203869	의료법	대리수술 처벌 강화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 강화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근거 마련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보훈부	9. 2.	2203496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영주귀국정착금 지급대상 확대, 저소득자 생계비 지원 등
				식품위해예측센터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여가부	9. 3.	2203579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찰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인터넷 주소만 알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 시청이 가능
해수부	9. 23.	2204157	수산업법	해녀어업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해녀어업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해녀’의 정의를 법에 규정하고,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명시함
환경부	9. 20.	2204101	물관리기본법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 1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고용부	9. 12.	2203990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 근로관계 포괄 승계 -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함 - 사업자는 사업이전 등의 예정일부터 50일 전까지 승계대상 근로자에게 사업이전 등을 통지해야 함 -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이 있음 -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둠 - 사업이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

II

9월에 공포된 법률 소개

1. 통계

■ 2024년 9월에 공포된 제·개정 법률은 총 28건이다.

- 28건 중 의원발의안 10건(35.7%), 위원장 대안 8건(28.6%), 정부제출안은 10건(35.7%)이다.
※ 8건의 위원장 대안은 의원발의안 23건, 정부제출안 2건을 대안반영폐기하고 발의되었다.
- 제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이후 8월까지 공포 건수가 전혀 없다가, 9월 10일 이후부터 공포 건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제22대 국회 첫 번째 공포 법률은 여야 의원발의 법률안 9건을 합친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되어 8월 28일 국회 통과하고, 8월 30일 정부이송되어 9월 10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 법률**이다.

■ 4년 전과의 비교

- 2020년 9월에 공포된 개정 법률은 총 3건이다.
- 2건은 위원장 대안이고, 1건은 대안반영폐기안이 없는 순수한 위원장안이다.
※ 2건의 위원장 대안은 의원발의안 11건을 대안반영폐기하고 발의되었다.
- 제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개원한 이후 같은 해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154건의 제·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 작년과의 비교

- 2023년 9월에 공포된 제·개정 법률은 총 42건이다.
- 42건 중 의원발의안 19건(45.2%), 위원장 대안 22건(52.4%), 정부제출안은 1건(2.4%)이다.
※ 22건의 위원장 대안은 의원발의안 80건, 정부제출안 2건을 대안반영폐기하고 발의되었다.

2. 구하라법(「민법」 개정) 소개

- 2024년 9월 한 달 동안 공포된 법률 28건 중에서 대표로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소개한다.

■ 기본 정보

- 의원발의 법률안 3건⁹⁾과 정부제출 법률안 1건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제2203266호)으로 8월 27일 발의되었다.
 - ※ 의원발의 법률안 3건은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에 관한 것인데,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인登記 간소화에 관한 내용으로, 상속권과는 관련이 없다.
- 「민법」 제1004조의2(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은 8월 27일 소관 상임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고, 9월 20일 공포(법률 제 20432호)되었다.
- (시행일)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건 개정과 관련 있는 헌법 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이 있는 날인 2024년 4월 25일 이후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추진 배경

- 현행 「민법」은 제1004조¹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방임·학대 등을 행한 친족을 상속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가출·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18대 국회¹¹⁾부터 제21대 국회까지 꾸준히 있어 왔는데¹²⁾, 유명가수 故 구하라씨 사망(2019년 11월) 사건으로 더욱 촉발되었다.

9)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64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08호,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38호.

10)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11) 제18대 국회에서는 2009. 5. 4. 발의된 나경원의원안(의안번호 제1804777호,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함),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제1813961호, 부양무위 이행을 악의적 회피한 경우 상속분을 50% 감액)이 있음.

12) 이화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64호)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7월, 7면.

- 이후 수습 건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중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2020헌가4 등 다수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병합)¹³⁾

- i.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해서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임
- ii. 「민법」 제1112조에서 **패륜을 유류분 상실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 「민법」 제1118조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인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함.

- 이에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도입〉

○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의 청구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존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제1004조의2제1항).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제1004조의2제3항).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제1004조의2제4항).

13) 법제조정정책관실,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2024-5월, 6월호”, 법제처 홈페이지, 26면 참고.

○ 가정법원

-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제1004조의2제5항).
- 상속개시 후에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제1004조의2제6항).

○ 시행일, 적용례 및 특례

- (시행일)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단서).
- (적용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 (특례) 헌법재판소 결정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법 시행(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부칙 제3조).

〈그 밖의 개정 내용〉

○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조문(제1112조제4호) 삭제하여 정리

- 이 조문 삭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20헌가4 등)이 있는 날(2024. 4. 25.)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문으로서, 이번 개정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조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 분사무소 등기절차 간소화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서 주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각각 설치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던 것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만 설치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제50조 및 제51조).
-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외국 입법례

○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외국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¹⁴⁾

구분	국가	주요내용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례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23개 주(15)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통일유언검인법」(16)에서 친권상실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제2-114조)
	오스트리아	친자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상속자격 박탈(오스트리아 「민법」 제541조제3호)
	이탈리아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상속개시까지 친권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상속자격 박탈(이탈리아 「민법」 제463조)
상속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사례	독일	피상속인 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폐제(廢除)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에 대해 법률상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박탈할 수 있음(독일 「민법」 제1938조, 제2333조제1항제3호)
	스위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그 친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족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만 18세 이후부터 유증, 사인증여 등의 사인처분(死因處分)을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음(스위스 「민법」 제477조제2호)
	일본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또는 추정상속인(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으로 될 자)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재판소가 심판 또는 조정 ¹⁵⁾ 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권(유류분 포함)을 박탈할 수 있음(일본 「민법」 제892조)

14) 김성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 현안분석 제211호, 국회 입법조사처, 2021년, 9면.
15) 박지원,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2020년, 236면.
16)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는 전미주법통일위원회에서 1969년 제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주에서 이를 채택하여 입법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걸친 상속법의 통일을 꾀하고 있다(박지원, 위 논문, 231면).

■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제도의 기본 개념¹⁷⁾

-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사망 후 재산 분배’에 관한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①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한 후(상속인 확정)**,
 - ② 상속인의 성별, 혼인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균분하는 “**균분상속제도**”를 따르되 **보충적으로 배우자 가산,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하고 있음(상속재산 분배).**
- (상속재산 분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균분(均分)**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민법」 제1009조제1항),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50% 가산된 상속분**을 지급하고(「민법」 제1009조 제2항),
 - ②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가산함(「민법」 제1008조의2).

[현행 민법상 법정상속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 ¹⁸⁾	상속인 해당 여부	상속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1(직계비속): 1.5(배우자)의 비율로 상속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1(직계존속): 1.5(배우자)의 비율로 상속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균분 상속
4순위	삼촌·고모·외삼촌·이모·사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균분 상속

※ 비고: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친족은 상속인에서 제외됨

17) · 이화실, 위 보고서, 5~6면 및 김성호, 위 논문, 3면의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임.

18)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발간일	2024. 11. 28.
발행처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8층

의원 입법에 필요한 정부 업무를 지원합니다.
*발의 전 예비검토, 발의 후 사후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

■ 법제조정총괄법제관	044-200-6802
의원입법 지원 총괄	044-200-6803
이견조정	044-200-6814
의원입법 지원	044-200-6805
법률안 모니터링	044-200-6822
■ 행정법제관	044-200-6568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804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12
■ 경제법제관	044-200-6815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560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13
■ 사회문화법제관	044-200-6820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810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07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3)	044-200-6819

메뉴 바로가기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